

박형준 / 5월 / 기출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5	11.5	16.5	11.5	58	1	3.13%	4	32
562576	15.5	10.5	14.5	12	52.5	2	6.25%	5	
563443	16	10.5	15.5	10	52	3	9.38%	5	
562188	16	9	17	9.5	51.5	4	12.50%	4	
562813	15.5	10	14.5	10	50	5	15.63%	3	
563199	15	10	14.5	10	49.5	6	18.75%	5	
563528	15	9	15	10.5	49.5	6	18.75%	4	
562350	16	8.5	13	10	47.5	8	25.00%	5	
562403	12.5	10.5	14.5	10	47.5	8	25.00%	4	
562434	13	8.5	16.5	9.5	47.5	8	25.00%	5	
563311	15.5	9	14	9	47.5	8	25.00%	5	
563344	15	8.5	14.5	9.5	47.5	8	25.00%	4	
562227	13	9.5	15	9.5	47	13	40.63%	5	
562320	13	8	15	9.5	45.5	14	43.75%	4	
562578	13	9.5	13	9.5	45	15	46.88%	4	
562176	11	10.5	14	8.5	44	16	50.00%	4	
563288	14.5	8	12	9	43.5	17	53.13%	5	
562305	12.5	9	11.5	9	42	18	56.25%	5	
563002	10.5	10	12	9.5	42	18	56.25%	5	
562339	13.5	8	14.5	6	42	18	56.25%	5	
562397	14.5	7	12	7	40.5	21	65.63%	4	
562189	12.5	7.5	13.5	6	39.5	22	68.75%	3	
562358	14	6.5	11.5	7.5	39.5	22	68.75%	5	
562508	13.5	8.5	12.5	4	38.5	24	75.00%	4	
563033	13	8.5	13	4	38.5	24	75.00%	3	
562354	11	9	12.5	5.5	38	26	81.25%	4	
562408	10	5.5	14.5	8	38	26	81.25%	4	
562342	10	5.5	13.5	8.5	37.5	28	87.50%	3	
562783	10.5	7.5	11	8.5	37.5	28	87.50%	4	
562924	12	3.5	13.5	7	36	30	93.75%	4	
562372	10.5	6.5	4.5	6.5	28	31	96.88%	5	
562326	8	3	8.5	7.5	27	32	100.00%	4	

<p>박형준/5월/기출GS/6회/1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 1번은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우셨을 다논점 조치문제였습니다. 조치는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과 관련하여 갑, 을 및 병의 상호 법적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답안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심결 선고 전 조치, 선고 후 확정 전 조치, 확정 후 조치로 시계열적으로 나누어 작성하신 경우가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p>일반론을 두껍게 적어 양을 채워서 조치를 다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치 하나 하나에 일반론들을 두껍게 적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을 답안에 녹여주시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보호범위 속부를 검토한 후, 과실 부존재 입증사항에 대해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직접침해 여부는 대부분 잘 검토해주셨으나, 사실관계 상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간접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정정심판에서 의견제출기회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심결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갑,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 취하 후 재심판 청구 등 다양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p>	

재심을 작성해주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의견제출기회 박탈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다논점 조치 문제는 정말 볼 때마다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조치 문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만큼, 까다로운 유형인만큼, 저도 해당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강사님의 목차 구성을 템플릿처럼 기억해놓고 준비해갔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6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국내우선권주장 및 침해소송에 대한 조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 역시, 조치 문제가 섞여있고, 문제 자체의 길이가 긴 만큼, 모든 논점을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에서의 주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주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가 어떤 논리로 출원인 변경신고를 요구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두껍게 판례로 현 출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논리 흐름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침해소송에서의 무의 법적 조치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하는만큼,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에 있어서, 비침해 주장, 효력제한(96조 1항 3호), 선사용권, 특허권 하자 관련 조치들을 모두 검토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소결

대부분 큰 논점들은 잘 찾아주셨고, 답안도 다들 잘 작성해주셨으나, 일부 논점들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후 놓친 논점들에 대해서는 오답노트 또는 단권화 등 같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박형준/5월/기출GS/6회/3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3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다논점 조치 문제였습니다. 설문 3개 모두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으나, 다들 템플릿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이뤄진 조치문제였던 만큼,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인 갑의 조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무권리자 출원 조치 유형은 템플릿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치에 앞서, 무권리자 출원인지, 갑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무권리자 출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선결적으로 검토해주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대부분 갑의 경우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독점권이 제한되므로, 침해라는 점, 그리고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등록으로 인해 전용실시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잘 찾아주셨습니다.</p> <p>다만,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가 생산한 발명을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 그로 인해 전용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작성해주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이용관계인지를 검토한 후, 실시를 위한 조치를 묻는 문제로서, 해당 유형 역시 템플릿이 존재하는 만큼, 이용관계 잘 포섭해주시고, 조치 다각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용관계 자체를 다뤄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3. 소결

그나마 템플릿으로 준비해놓은 조치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감 있게, 다각적으로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치 문제는 되도록 사실관계를 짧은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나, 기출 문제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박형준/5월/기출GS/6회/4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4번은 공동발명에서의 단독출원, 단독 심사청구 가부, 그리고 거절이유 해소 조치 논점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나, 설문 3번의 러프함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공동발명의 경우 단독출원 가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33조 2항 및 44조를 통해 조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조문과 함께, 답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단독 및 제 3자 심사청구 가부를 물어보았는데, 심사청구는 복수당사자 대표(11조) 규정에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에서는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유를 물어보는 러프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포섭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 등의 조치를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공동발명인 제조방법에 대한 등록 조치도 잊지않고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전체적으로 조치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되었던 회차였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 문제 4번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치 문제를 많이 연습해볼 수 있고, 오답노트 등을 통해 잘 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p>	

8.5 18.5

문제 -

2 실문 11)

1 문제집 - 무효심판 심결 관련 조리 - 법1332

하가임은 특정한 공익상 도열 시키는 기조이다. 근저 특허권이
따라서 특허 심결 관련 조리를 살린다

2 심결 확정 권 조리

(1) 적부

1) 이해 관계인 법1332 1항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 관계인으로 한정한다

2) 특허 심사원대로 이해 관계 제한 조항의 (소극)

① 심사원 이해 관계 제한 관련 제1항

문래 제1항은 개항 영커 임의 이해관계 부정하면
제2항 제1항은 불이행 있어 이해 관계 공결 한다

② 제2항의 특허심결 심결 원대 여부 - 법1332 4항

공적인 특허권은 공적 특허 심결 상 모두가 같이 심사원
심결 할 것이 필요하다

③ 소결

① 특허 심사원이 아니라 ② 심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 부정 되기 않는다.

3) 적부 관련 조리 - 부정항의 소

제1항은 심판 계속 중 부정항의 소는 유효하고. 소의 이익



어떤 각각 하므로 복행 양의 식도 해본다.

(2) 본안

1) 甲 - 문헌상 주장

: 즉으로 1항은 이유로 특허 출원한 것은 주장한다.

2) 甲, 乙 - 문헌상 부정

공기발명의 선행기술 목적 및 필수성 완전 신한다.

3 심결 선고 후 코리

(1) 甲과 乙의 코리 (기각 심결의 경우)

1) 정경 심판 청구 - 고처결정 공통

법 139조 3항에 따라 甲과 乙은 정경 심판
청구 모두 같이 청구 필요 하다

2) 심결 취소 소청 - 유사결정 공통

법 181조 2항은 법 139조 와 같은 권한 있고
취소 소청 본안 보다 유사 결정 1인 이 심결 취소 소청
원고 목적 을 경 하 므로 甲, 乙 중 1인 이 행사 가능 하다

(2) 甲의 청구 (인용 심결의 경우)

1) 심결 취소 소청 - 파괴 목적

법 181조 이 따르면 甲 또는 乙 중 1인 은 대상 으로
가능 하기 만 안정 시켜 무엇 대상 으로 청구 가능 하다.

2) 새로운 문헌 상 주장 - 특례 한 실 취제

심결 취소 소청 특정 성격 으로 가 기 무 로 다른 청구



사유로 특정 하여 부호 1로 처분하라

4 심판 항쟁 후 조치

(1) 인용 심판 항쟁 후

1) 甲 조지 - 특제된 행사 불가

특제된 행사 불가 하
특제된 행사 불가 하

2) 乙 조지 - 기타의인 항쟁 항거

항쟁 항거 항쟁 항거 항쟁 항거 항쟁 항거 항쟁 항거

(2) 가장 심판 항쟁 후

1) 甲 조지 - 일4부제리 항165로

항165로 항165로 항165로 항165로 항165로

2) 乙 조지 -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특제된 행사

2 심문 (2)

1 J의 행위가 특제된 보 범기 속부 (적극)

(1) 특제된 보 범기 (적극)



1) 구성요소의 완비 및 속귀 권리 침해 여부 (소극)

구성 요소 전체 원형상 선행권 침해로 부당하고 속귀의 원형상 공중 생산까지 보는 범위 인정이 어렵다

2) 국내 생산 간극 범위상 침해 여부 (적극)

① 국내 생산 간극 범위 자체

반례를 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개별로 수출되고 가공권을
 갖는 것이 예외적으로 있고, 가공 권리가 국제 사법재판
 간단한 전거 판결 침해를 구성한다고 간극한다

② 사안의 경우

J는 대부분 생산 단계로 수출 범위를 국내 생산으로, 가공
 권한을 갖는 것이 예외적으로 국내 생산 간극 범위를 넘는다.

(2) 간접 침해 여부 (제한적 적극)

1) 구법상 침해 여부 - 생산의 이미제한 (소극)

간접 침해를 독자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확장되기
 많은 범위에서 인정 되므로 개미 생산자가 인정 범위
특정 침해 개연성상 간접 침해 부당 주장

2) 개정법상 침해 여부 - 2025.11.22 개정 (제한적 적극)

특히 1조 2호에 수출이 전압적인 하였으나, 반례를 이
[권용품] 여하에 따라 간접 침해를 결론짓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다.

2 J이 과실이 없다면 하기 위해 임의의 사항

(1) 法 1303 의미 하기

임금 책정 권한 사계 황제에게 과할 정도로 인정함

(2) 분별 방법 ① - 국공 황제에 관여

황제에 관여 ① 총제권 권력을 맡기 보아 않거나

② 총제권의 권리 밖에서 속제권 출발권을 인정 함.

(3) 분별 방법 ② - 간접 황제에 관여 (완화)

황제에 관여 ① 총제권의 권력을 맡기 보아 않거나

② 권력을 맡은 별리 분별 증명 하면 권력 함.

II 실문(3)

1 권력 기각 심판의 타당성 (소극)

(1) 권력 심판 의미 하기 法 1362.

총제권이란 소극 총제권 제한 내용 변
권력 기준 제로 이 다

(2) 실제적 요인 - 法 1363 1. 34. 5항

3가 불기 라 병 기 에 관 여 한 경 우, 선 사 행 의 위
권 력, 실 질 적 행 위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3) 실제적 요인 - 法 1363 6항

심판 권 은 기 적 심 판 권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4) 사안 의 성 질 - 실 제 적 위 법 위 법

실 제 적 위 법 위 법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의 위 권 력.



있으므로 적용 하기 아니하다.

2 甲과乙의 상표 확정 권 조리

(1) 상표 취소 청구 - 유사물상표 판정

법 186조는 법 139조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별
행위로 권리를 1인 으로 가능하다

(2) 취하없이 재심판 - 고지 판정 판결

재심판이 공통 판정을 문제 되지 아니하고. 甲과乙
이 같이 제기 해야 한다 (법 139조 5항)

(3) 취하 후 재심판 - 고지 판정 판결

특히 행정 심판은 재심 청구가 없으므로 甲과乙
라나 제기 하면 문제 안다

3 甲과乙의 상표 확정 후 조리

(1) 재심 청구 - 법 117조 -

재심 청구 문제 4항 이 있으므로 재심 청구
하기 가능하다

(2) 재심판 청구 - 일사 불 개 리

공판 중 판 청구 일사 불 개 리 적용 되지 않고 항
재심 청구 가능하다

- 문제2 뒤 기 -

11.5

문제-2

2 실문(1)

6

1 문제권 - 法 16조, 46조, 보령양형기 라임성

의식 재산 하강의 우선 하등의 하강은 살피기 위해
남의 위반 관한 라임성을 둘러싸고

2 자기 라임 - PCT B(2)(b)

PCT 관련 국내 하등권 규정은 기술적 진보
결과에 대한 관한 한다.

3 국내 하등권 규정

(1) 호 55조 다

관사라 권리를 위해 개량 발명의 개 해
국내 관한 규정 조항 하등의 예외이다

(2) 무관 결과

선출원기 최초 연의 4번 3면에서 기재된 다른
관련 하등 발명 하등 원의 개가 행수 해야
선출원 후 1년내 출원수 출원시 후기 하등
선출원도 연의 개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 국제적 무관 용의

JCI 출원시 출원의 연의 변경 선출 하등 발명
게 출제 가 권가

4 국제적 요건 관련 문제

(1) 관련 규정

1) 법 55조 1항

특허권 발생을 위한 권리가 발생된 국장 기행하에

2) 법 363 4항

출원인 명의 변경 시에 특허 발생 요건이요

(2) 관련 판례

1) 법 55조 1항 출원 해석

법 52.53조 2항 법 54조 다른 말로 특허권
발생 시 출원 권리의 전 양도한 것으로 이의
개량발명을 위해 권리가 발생하기 위함이라

2) 법 363 4항 적용 범위

출원 후 출원인 전수 출원인 명의 변경도 특허
발생 요건이요 이의 특허 출원 관련 명세로 변
수생권 주장할 수 있는 과하기 특허 발생 안함

3) 출원인 명의 변경 필요성 - 결함

출원인 명의 변경은 특허권 발생 시 전하기 마다
다변 문제 없음을 전제이라

(3) 사안의 경우

본 출원인 명의 변경은 출원인 명세에 의해 된다.

5 결론 - 무효 처분 부당

절차적 관행을 위반한 위법 사항이 없다.

II 설문(2)

5.5

1 카라 관련 항변

(1) 당연 무효 주장 거부 (소극)

취재원은 무효 심판이 크게 지기 고려 하여
무효 사유가 명백 하더라도 당연 무효 아니라고 할지

(2) 권리 범위 불명 거부 (소극)

공지가 될 때의 범위 취재원은 산책은 과는 차가
권변해 영사 카라 작품 카라 관련 제정하고
모르

(3) 권리 내용 항변 거부 (적극)

사적 사치 일족을 공중에 기비 하기 양호
형식적인 권리 행사인 인정 하는 것
실질적 권리 및 공평성에 비추어고 특히 법제
입법 목적에 별기 ~~양호하고 권리행사의 전제사유 없음~~

(4) 과잉기율 항변 (적극적 적극)

불인 취재비 편수예로 과잉기율은 항변 가능하고
~~권변의 기반도 불명명하기 법은 권익 보아~~
불명 하기만 과잉기율과 권리 행의 불리가

2 심사유권 항변

① 훈환 권 2019.08.05 복려 법령 시행하고

② 선의 임은 입증 하면 ③ 심사유권 인정 권리



3 특허 제1항 항변

(1) 法 96조 1항 3호

특허 출원권 주체 요건 충족에 개개 특허제정권자

(2) 사안의 경위

X"은 출원번호 2014, 08.05 특허 요건 불충

이므로 특허 제1항 사안이 있다

4 특허실권 항변

(1) 적부 - 이해관계인

戊는 甲 특허에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사람 이므로

특허실권 항변 이해관계인 요건이 있다

(2) 가분안 - 법29조 2항

A'의 권보행 결여는 이유로 특허실권 항변하여

甲 특허를 취소 시킨다

(3) 사권적 권리 - 소용권기행

특허실권 항변은 어떤 法 169조 2항에 기한

소용 권리 요건 한가

5 戊' 특허권 확보 (소용)

자기 실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로 공인출원

요건이 있는 사안이 있는 한, 완전성 요건이다.

문제-3

4.5 16.5

1 실문(1)

1 발명 A의 권리자 문제

(1) 원칙적 권리 문제 - 영권 면권 들

특332 2항에 따라 공동발명으로 공동 권리 있다.

(2) 특별적 권리 문제 - A

명시적 이권은 아니지만 묵시적 이권으로 모든 발명 A가 권장할 권리 아니냐

(3) 특권위과 - B

A와 B 사이에 특히 관련 태도가 없음으로 B은 특권위과 이라

2 무권리가 B 출원시 별격지위 - 권리 지위

무권리 출원은 선권 지위가 없고 특정한 선권으로 정당 권 권리자에게 특격 없다. 다만 권리 지위 지위가 없다

3 출원권 공한 권리

(1) 동시권 출원

B 출원 권리 권리자일 가능 하냐

(2) 권리 예외 규범 공한 출원 - 특3302 1항 2

B 출원 권리 후 1년 이내에 의사에 반한 공시 규범 하에 출원 가능 하냐



(3) 징역의 기간에 관하여 - 법 343

1) 사형의 크기 - 권보 계를 법 343의 2

이 법 343 1항 후 기판으로 권보 계를 본 할지

2) 소결

이 법 343 2항 중 기결 불결 30일내 결선 할지

4 형의 변경에 관한 조항

(1) 신형 - 합의시

2차 합의 후 형의 변경 신형 할지

(2) 원형 - 합의 불발시

합의가 이루어지기 안됨에 형의 변경 원형 할지

5 기타 조항

기판 행위, 양도, 불응나 보강 큰 도기 할지

II 실문(2)

6.5

1 甲의 권용살해죄의 여부 (각각)

이 법 101조 1항 2호 따라 등류 하므로 가는 권용 살해죄에 해당 할지

2 甲의 특채권 침해 여부 (각각)

(1) 이 법 91조 1항 1호

法 943 1항 1호에 의해 부근 관련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카메라의 안으로 권위 소생되지 않으므로
권해 여부가 없다.

2) 동등권 침해 방지 (불분명)

동등권 침해는 발명 4는 생산 및 판매되는
행위 한경 차별 없이 안으로 부러 구별할 게
까지 포함 관계 의 이 가

3) 소명

동등권 침해 범위 대해 이유 참해 기 본 사 이 있다.

4 甲 관련 권리

(1) 민사권 권리

항제권 (126) 중재 배상 (128) 인도회복 (131)으로
및 불공익 행위 제한

(2) 형사권 권리

항제권 (225) 불속 (236) 양벌규정 (235)으로
고소 한다

(3) 기타 권리

권리 범위 관련 실권 및 세 면 제한

5 乙 관련 권리 구분

(1) 안으로 부러 구 행위 - 동등권 행위 시도



항해 여객 항술하게 하기 5세 무제한 행사 행사

(2) 2의 항해 - 크리 불가

2의 항해 5세 개비 5는 크리 불가 없다

(3) 실내 급기 계약 이도

4의 2의 원배 상 상배 계약 하문권자

II 실문(3)

5.5

I 이용관계 성립 여부 (각각)

(1) 항선

2대를 이용설, 권부포항설, 개관 불명설, 실시 불가권
항해 불가기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고

(2) 취체

1) 부가 관련 취체

특의 불명세 새로운 부분이 부가되는 요지를 권부
포함 하고 이를 2대로 이원하여 열거선이
주기 되는 경우 이용관계 성립하고 권부이므로 여행계약

2) 일체성 관련 취체

새로운 구성 부가로 증인한 후각인 불취체인 취체권
기을 불명세 일체성 유지 하면 이용관계 이다.

(3) 경포와 사안

선형 불명 보호 2 구개 일체성 중요로 고취성 취체 이다
관상물 보호 카메라 A는 밀라상 카메라의 기능



이 귀속의요 이유관계 선입 한다

2 후권 권리와 선의 제한 - 조 98조

후권 권리 기준 조 188에 의해 선의함에 있어
계약 사항이 없다

3 J의 선의 제한 권리

(1) 선의 허락

후라 선의 허락을 위한 한계 시조 한다

(2) 공통물사실 권리 제한 - 조 138조 1항. 2항.

1) 9권 제1항

이유관계로 인한 선의권 경계권 가려 가진
권한 신보권이 없다 증명 해야 한다

2) 사안지 경우

9권 제2항 증명하야 강제 실행권 증명 가능하다.

(3) 부록허권 양수

부·록허권 양수 조 98조 제1항 선의 권리를
소멸 시킨다

(4) 부록허 가라코다

부록허 소멸시 5배 복수금과 함께 시조 한다.

(5) 기라권리

채배, 로깅 등 큰 기라권리 시조 한다

11.5

문제-4

I 선택(1)

3

1 ~~물권 AB의 권리 속 형제 - 공유~~

(1) 공동발명 의미 회기 : 법 333 2항

발명자 상호 사이에 공동발명으로 한 경우 특허권은 상호 공유 권리를 가진다

(2) 사망의 경우

국가 또는 물권 AB와 2 제법은 공동 발명
하일므로 특허권은 상호 공유 권리를 가진다

2 단독 출원 거부 (23)

(1) 근거 - 법 443

특허권 발명수 또는 권리는 공유하는 경우
공동 출원 권리가 없다

(2) 설명

국가 또는 물권 AB에 개별 권리를 공유하므로
공동 출원 해마 하고. 단독 출원시 법 443 위반
의 하자가 있다.

3 결론 - 단독출원 불가

443 에 따라 공동 출원 보한다



II 설문(2)

1 甲과 乙 단독 심사 청구 거부 (제3항 적용)

(1) 근거 ① - 법 11조 1항 본

2인이상 동시 출원한 발명을 때 각각 동시 에 관한
결하는 데로 한다

(2) 근거 ② - 법 11조 1항 단

라만 대출자가 선출된 경우 대출자만
결하는 데로 한다

(3) 사안의 경우

대출자 비선출시 각각 단독 청구 가능하지만
선출시 2자만 심사 청구 가능함

2 제3자 임의 심사 청구 거부 (제3항)

(1) 근거 ① - 법 59조 2항 본

5주 등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심사 청구 가능함.

(2) 근거 ② - 법 59조 2항 단

출원인은 물론 요해에 제약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제3자]도 5주 등의 이유로 심사 청구 되고

[임의]는 3자만 출원인이 아니므로 제약이
없다고 할 것이다.

II 실문(13) 5.5

1 대응 권택 - ~~결~~ 기결이 존재 타점성

기결이 존재 타점성과 관련 하여 대응 권리자
결라 권자.

2 지출 계 관련 권리

(1) 기결 결정 권 권리

1) 의결내

문란 AB가 기결이 존재 하는 경우

2) 보장

문란 AB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한도에 이 보장
이 가능 하다

3) 변경권 - 불가

지출 계는 디바이스로 실용 신안 범상 허용하기
아니하고 있다.

4) 분할권 - 제한적 적용

특수 방법이 발명수 수에서 기계에 한하여
적용 가능 하다.

(2) 기결 결정 후 권리

1) 사권적 권리 - 분할권

분할 권으로 특정 방법 중의 시도 기결하기

2) 기결 결정 불부 상판 - 이후 132321 17



물결 AB에 대한 기록 정보 분석 소문 항이므로

3) 대상자 항 - 이항이므로

대상자 항으로 인해 보라 수반하여 기록서

4) 수직 항 - 상행정보. 분리항

기록 정보 분석에 대한 수직 항이므로 상행정보
수라 분리항 기문 항

3 물결 AB 제법 관련 항

(1) 발명의 설명 기재 있는 경우

1) 변경 항 - 불가

실용신안법 102 조와 의약용 제크 변형은
하위항기 이나항기

2) 분해 항 - 가능

분해 항은 분해 항에 의해 별도로 권리 확보 가능함

(2) 발명자 설명 기재 없는 경우

1) 별도 항

별도 항은 종래 제크 변형에 대해 권리를 확보
항으로 함

2) 추가항 항 - 수직항

치료개기 대한 수직 항은 수직항 항
항 항 항

- 감사합니다 -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55

I. 설문 번 6.5

1. 범 - 무심탄 (法 1332)

공익 해를 끼칠 특이한 물건에 대해 제 2, 279
사범 조치가 취해진다.

2. 특의 권리 취득 권

(1) 특의 권리

1) 法 993 4항

공유자는 모두 동의를 받고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안

특의 동의를 받은 바 처분 무효이다.

(2) 야비한 행위 (제 1332)

무심탄을 취득할 수 있는 야비한 행위로
이 인에 법규상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야비한.

(3) 소결

특은 특의 특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특의 권리
취득 무효이다.

3. 특의 권의 다른 심판의 소결

산정 위반의 경우 인종상권이 될 여가 있다.

인종상권이 다른 권으로 된다.



4. 상표권 전 권

(1) 부양합의

甲, 乙, 丙은 부양합의를 통해 아이폰을 생산하여 무선으로 판매한다.

(2) 최소 권유

甲은 최저에 무선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권 - 甲, 乙은 정당권을 통해 무선으로 판매한다.

5. 상표권 후 권

(1) 상표권소유 재기 (法 86조)

甲, 乙은 상표권소유를 통해 상표를 복원할 수 있다.

(2) 단독 재기 거부

1) 1인의 상표권소유 재기 거부 (제외)

①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보완적으로 유지한다.

② 유지하지 않고 ③ 유지하는 권을 유지할 수

있다. 2) 甲 또는 乙 단독으로 소유 재기 가능하다.

(3) 상표방기

1) 무제반설

상표권소유권은 양도로 상표의 권에 대한 권이

유지함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사안

甲 또는 乙은 상표의 유지를 제한하여 유지할

수 있다.



(4) 정역상판 (法 1362)

甲, 2인 공동 출원 발명권을 공유 정역상판 특허
무효사유를 입안할 수 있다.

~~6.~~

6. 甲의 특허 대한 권리

(1) 무효상판 소권 (法 1332)

무효상판 소권으로 제1항의 특허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실시권 소송 (제133조)

① 甲은 乙에게 실시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乙은 실시권자가 아니므로 기권양양행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7. ~~7.~~ 乙의 특허 대한 권리

乙은 甲에게 출원에 대한 권리를 귀하는 것은
산정하지 아니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II. 설문 2번

4.5

1. 乙의 행위가 특허 출원권 밖에서 속하기 (주요)

(1) 속자의 행위, 정역상판의 행위 (제133조)

제1항의 정역상판 권리가 신시되어야 한다.

(2) 무효상판 소권 (제1332)

① 실시를 위한 부록 권리가 신시되거나 주요점



같은 반례들이 생기기 ② 하나씩 주체에게 속이 되는
 기금, 3점이 예외로써 ① 그 기금, 3점이 주어 시드해나
 간단하여 ④ 유가증권 결합된 일체로서 현금을 가하는
 점 주체 생산인 간주한다.

(3) 출산

① J이 국내에 특허발명 A의 "특정성을 갖는 반례들"
 생산한 점 ② 바인 단계가 중국에 매출하는 점
 ③ 기금, 3점이 사도, 관련된 것은 보는 점 ④ 기금,
 3점으로 유가증권 결합된 일체로서 현금을 가하므로 ⑤ J이
생산행위는 간주한다.

(4) 기술수출방지

개량방으로 인해 수출금지도 간주한다.

2. J이 과실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입증책임

(1) 과실의 책임 (法 1302)

침해하는 과실이 주관되어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부담하기 부담한다

(2) 과실의 책임 여부 (判例)

특허권자 4종 등록증에 개표하는 바 인본인본 쉽게
할 수 있는 침해하는 과실의 신체가 침해자의 주체
를 부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주한다.

(3) 특허법인 (제111)

특허가 특허권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권리방식에
숙지 없었던 사안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한다.

(4) 사안

주은 자신의 특허를 특허법인 54조 ① 甲의 특허법
A를 몰랐거나 ② 甲의 권리방식에 숙지 없었던
정당화할 수 있다 한다.

II. 실문 2번

1. 특허심판원의 권리 행사 권력

(1) 특허사 제척기각 (제111)

특허사 제척기각은 심판의 주권인 심판의 신봉을 위해
엄중 강요되는 것이다.

(2) 사안

특허심판원은 甲, 2에게 특허사제척기각을 부여하지 않은
취향이 존재한다

2. 甲, 2의 권리

(1) 심정취소 (제186)

甲, 2은 심판의 도발을 이유로 심정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 후 개출원

특허법은 특허권의 귀속 (만년특허법 26조 2항)이 부연
하는 바 특허 후 개출원 가능하다.

(3) 일사부재리 (法 163조)

甲, 2은 동시특은 이유로 권장심판을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 시배된다.

(4) 실질판결을 개판원서1) 심고

甲, 2은 심고를 통해 개판원을 부복가능하다.

2) 재심사유 청구 불가

甲, 2은 쟁쟁이 극복방법은 이유로 2심 (法 443조 1항 8호)
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2>

5.5

105

I. 선택 1번

1. PCT 8 (2) (b) 적용

PCT 8(2)(b)에 따라 국제법이 적용된다.

2. 국제우선권 규약

(1) 특허 권리 (法 552)

국제우선권규약이 권리를 가해 우선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이다

(가) 원인, 결과

① 출원인일 ② 최초 출원일 방기 내역 ③ 출원서류를

④ 1년이내에 출원 ⑤ 출원연월일, 권리를 가해

해야 한다 (法 552 2항)

3. 지식재산권법의 무효판결 타당성

(1) 연관규정

1) 法 382 4항

출원 수 승제는 출원연월일이 특허발생연월일

의 法 552 1항

특허를 발여준 최초 출원일 방기 내역

우선권규정을 할 수 있다.



D. 셋째 2번

1. 문제의 순서

2019. 1.4 출원 후 등록된 사항이 바뀌었으므로
바뀌어진 순서를 풀겠다.

2. 특허권 발생 요건에 대한 개시 문제

(1) 당연무형 권임 불가

개시는 진보성을 이유로 당연무형권임이 불가하다

(2) 권리방기부형 권임 불가

신규성 부형인 한시 권발성 이유로 권리방기부형이
불가하므로 (부형) 개시는 특허 발명 X의 여하
권리방기를 부형할 수 없다.

(3) 권리상충부형 권임

1) 부형

특허권은 사적재산권 바 권발성이 권여된 후 이를
인정하면 신원적 권리 발생하고 공익 요청이 받아들여
특허법 입법목적에 정면 배치한 바 권발성이 명백히
부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권해소송은 권리상충이
장부를 선택이 가능한 권해소송 권발성 여부를 법원이
판정할 수 있다

2) 사안

개시는 A가 권발성 요건에 정당한 경우 특허

침해사건은 권리남용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각권상대권 주장

X' 이 각권상대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가'의 침해에 대한 가'의 권리

(1) 갑 특허권 가' 주장

가'는 권보정 법령을 이유로 갑 특허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2) 선시발원 주장 (법 132)

(가'는 2019. 8. 5에 $A'+B$ 를 선시발원 이유로 선시발원 및 선시발원을 주장가능하다)

(3) 출원권 귀속 원배출권 문건 (법 96(2) 및 38)

갑의 X' 출원권 귀속 2019. 10. 7 이전에 권리발원 문건은 원배출권 주장할 수 있다.

<문제-3>

J. 섯문 1번

4.5

14.5

1. 제1 종류의 하라 - 무원리의 권리

(1) 제 33조 1항

발명의 인성과 동등한 특성을 발할 수 있는 크기의 기술이다

(2) 발명성 (제 34조)

발명적인 제 23조 3항의 섯발성이 기술상의 큰데
실용적으로 가져야 한다.

(3) 사인

주은 섯발성 카메라의 인연 자료를 부합한 방법으로
압수하여 출원한 바 무원리의 권리이다.

2. 무원리의 권리의 권리

① 가액이, 무원리가 존재하며 ② 섯출된 가액이 없고
(제 36조 1항), ③ 공제 공제할 가액이 있는 특이된
섯출된 가액의 액이나 동일 발명자에게는 바치지 않는다.

3. 특허 권리

(1) 통상의 출원서

섯심 위반은 이유로 통상의 권리가 부가되지

(2) 공제예외규정 (제 30조)

부은 공제된 산출액의 1년이하 출원한지 이내



비밀 공리를 이유로 라이선스권도 가능하다.

(3) 정보제공

甲은 부위와 관련된 어떤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30일 내 추후 하여 부위와 관련된
판정사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출원~~ 출원 ~~변경~~ 변경 ~~신청~~ 신청 ~~가능하다.~~

甲, 2이 합의된 경우 ~~출원~~ 출원 ~~변경~~ 변경 ~~신청~~ 신청 가능하다.

(5) ~~출원~~ 출원 ~~변경~~ 변경 ~~신청~~ 신청

甲, 2이 합의된 출원 ~~출원~~ 출원 ~~변경~~ 변경 ~~신청~~ 신청 가능하다.

II 상문 관. 5

1. 특허 권리 - 통상실시권

(1) 법 102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안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의 권리에 있다.

2. 특허 권리 - 권용실시권

(1) 법 100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권용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 103조 항

권용실시권 특은 특 권 용 실 시 권 의 권 리 에 있 다.



(3) 사면

가'은 부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득권한 바 가'의
 재물은 권용신권이다.

3. 가'의 부에 대한 권리(1) 法 943 1항 단서

권용신권이 설정된 경우 권용신권자가 상속 권리를
 주장한다

(2) 사면명근

가'은 부의 상속이 유효한 경우 사면명할 수 있다.

(3) 민사권 권리

가'은 부에게 ① 권용신권 (法 1262) ② 순이익권 (法 1282) ③ 신통의부권 ④ 부양부담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그러므로 공판각순이익권을 주장한다 (法 1282 ⑤)

(4) 상속권 권리

부의 상속 2연년 바 ① 권용신 (法 243)
 ② 물권 ③ 양양권이 가능하다.

4. 가'의 재에 대한 권리(1) 法 1182 1항

동상신권을 득권한 경우 권용신권자에게 이를 처분
 가능하다.

(2) 생산, 판매의 경위

특정 자에게 권용권한이 특정 인물 에게 생산, 판매 하여 가능 할 수 있 다.

(3) 다른 실시행위인 경우

1) 대항불가

특정 사용자 다른 실시행위는 대항불가하다.

2) 소위 권량

특정 권용권한이 특정 인물 에게 부여 하여 대항 불 가 할 수 있 다.

3) 소위

권용권한이 특정 인물 에게 부여 하여 대항 불 가 할 수 있 다.

II. 실용권

1. 이용관계

특정 권리 보유 A의 이용관계 여부를 판정 할 수 있 다.

2. 이용관계 판정

(1) 이용관계 (부정)

선특허발명이 ① 새로운 개량적 구성을 포함하여 ② 본질을 전 체 포 함 하 는 ③ 이 전 과 의 이 용 하 는 ④ 선 특 허 발 명 의 구 성 요 소 를 인 체 하 는 경 우 이 용 관 계 에 속 하 는



하 ①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3) 사안

J의 발명이 M의 발명 A의 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일체성이 유지되는 것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2) 작용효과 관련 (특례)

작용효과 현저한 효과를 가진 경우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3. J의 권리

(1) 법 98조

J은 발명 A'의 실시가 제한된다.

(2) 제 99조

J은 발명 A의 실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특수재판부칙규정 조항 (법 98조)

J은 상반 영역의 경우 가진 공한 개량 권양으로
부양하여 (특례), 특수재판부칙규정 조항
할 수 있다

(4) 가타조항

특수권 무효사유조항, 역양항, 신기술수용등 조항

(5) 조항이외의 조항

J은 특수권 조항이외의 조항을 권양할 수 있다.



(6) ~~원주~~

본 원의 발명 A를 원하는 사람은 응답 할 수 있다.

<끝>



<문제-4>

12

I. 선문 1번

3

1. 甲, 乙의 권리

(1) 증빙명 헌 (제119조)

① 가설상의 흠이 신원적인 기여부 ② 증빙명 헌이 신원적인 심정적어야 한다.

(2) 사안

甲, 乙은 증빙명 헌 바 물권A의 권리관계이다.

2. 특허권 취득

(1) 근거법 - (제 44조)

특허를 받은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권리관계 취득해야 한다.

(2) 사안

① 甲, 乙은 발명 AB를 권리관계 바 ② 甲, 乙 공동으로 특허권취득해야 한다.

3. 권리

甲. 乙은 <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I. 선택 관.

1. 단독 실시권 가부 (각주)

(1) 법 113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행할 때 주자가
모두를 배제한

(2) 사안

1) 특허권 취득

甲, 2층 특허권을 선출한 사람 없다

2)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상식적으로 2층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甲은 2층 단독 실시권 가능하다.

2. 제3자나 밖으로 실시권 가부 (각주)

(1) 법 113 조항

특허에 대해 누구든지 특허권자에게 우선 배제 실시
권을 할 수 있다.

(2) 사안

1)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발명 A는 2층의 특허권자나 예외적으로 인정받지

2) 소결

제3자는 실시권 가능하다

III. 실패 3번.

1. 의약품비밀주의 (약국)

특정 AB2 제형은 크레타인 제형방법인 바 의약품비밀주의
해당한다

2. 가격이 해방방안

(1) 비밀주의의 장

비용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이 약가가 불가능하다.

(2) 산정, 인봉의 장

① 산정의 장 (法 29조 1항)

산정방법은 통해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인봉의 장 (法 29조 2항)

특정인의 특정인봉의 크레타가 충분히 가려야
쉽게 예측해야 하므로 (부(의)), 크레타가 쉽게
예측의 양을 증명하거나 산정양이 추정
양 변화 강행 가능하다.

(3) 분할의 장 (法 52조)

특정 특정 가 분할 가능하다

(4) 분할의 불가 (法 53조)

크레타, 크레타의 장 분할 불가능하다

3. 제3방법 권리행사의 방법

(1) 보류

- ① 발명자의 선점력이 기재된 제3방법을 권리행사 가능함
- ② 물질 AB 권리를 식별가능함

(2) ~~발명권~~

제3방법을 발명권권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3) ~~구체적 권리행사의 방법~~

권리를 식별가능함 제3방법을 권리행사 가능함
 권리를 구체적 권리행사의 종류 판단사항을 확인 수 있다.

4. 권리행사의 범위

(1) ~~타인의 권리~~

타인 ~~의~~ 권리행사의 범위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무효~~

타인 ~~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제3방법의 효력~~

(1) ~~제3방법이 타당인 경우~~

제3방법발명권인 경우 ~~제3~~이 ~~효력~~으로 권리가 없다.

(특 132의 1)

(2) ~~타당~~ 제3방법이 타당인 경우

타인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 61조의 2)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